

문서번호	유통관리팀-3897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11.10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강서지사장
		11/10
이계진	최영규	노계호
협 조		
	<i>P/L</i>	송태섭
감 사		

시장도매인 출하자 신고제 관리 강화 추진(안)

2020. 1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유통관리팀

시장도매인 출하자 신고제 관리 강화 추진(안)

추진 목적

시장도매인과 거래 중인 출하자 정보 관리 내실화와 출하자 신고율 제고를 통해 거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농안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 시조례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 출하자는 법령에 따라 출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농안법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시장도매인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의 농수산물 수탁을 거부할 수 있음
- 개정된 농안법에 의거하여 2009.1.1부터 출하자 신고제 전면 의무화

2 현황 및 문제점

출하자 신고 현황

- 출하자 등록 현황 및 신고율('20.9.7. 시장도매인 전체 등록 기준)

구분	등록 출하자수	출하자 신고자 수	출하자 신고율
시장도매인	16,611	222	1.34%

- 개별 출하자 정보를 시장도매인이 정산시스템에 자체 등록하여 활용
 - 개설자 신고 없이도 출하자 등록 및 활용 가능
 - 현재 시장도매인 평균 등록 출하자 수 277명(최소 10명~최대 1292명)
 - ※ 과일부류 평균 274명, 채소부류 평균 280명

문제점

- 별도 승인 없이 자체 개별 입력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출하자 실적 분석 불가
 - 대표자명·주소·연락처 등 필수정보 미입력 또는 오류 사례 다수
- 정보 부족·오류 및 체계 이원화로 개설자에게 기신고된 출하자 정보와 동기화 불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미비로 법률 문제 발생 우려(공사, IBK 정보 보유 근거 미비)
- 산지 여건 및 거래관행상 출하자 신고 유도 및 강제의 현실적 어려움

3 그간의 추진경과

홈페이지 출하자 신고 기능 개선(4~5월)

- 정산조합, 공사 전산정보팀 등 관계부서 합동회의(4/1, 4/17)
- 출하자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동의 정보 개선, 신고 시 받는 문자 서비스 개선

「출하 요령 및 주의 사항 안내문」 발송(6월~)

- 내용: 출하자 신고 방법 및 출하·정산 절차 등 안내
- 결과: 총 대상자 4,626명 중 3,438명 발송 완료(74.3%, 10월 말 기준)
※ 시장도매인 등록 출하자 중 주소가 확인된 출하자에게 발송, 연말까지 전체 발송 예정

출하자 신고 활성화 대책 관련 연합회 의견 조취(7~8월)

- 출하자 신고 활성화 대책 요청(7/6, 8/5)
- 연합회 출하자 신고 활성화 대책 제출(8/18)

유통인 간담회를 통한 안건 논의(6, 10월)

- 출하자 신고제 관리 강화 추진(안) 논의(6/29, 10/15)

4 추진 계획

출하자 등록 정보 자율정비(~12월 말)

- 출하자명, 휴대폰번호, 주소 등 필수 입력 사항 정비 및 공사 제출
- 시장도매인별 자체 정비 후 개설자 신고 정보와 동기화 실시
- 시장도매인 실무자 교육 실시
- UNIS 출하자 정보 관련 메뉴 활용법, 출하자 신고 추진 계획 설명 등
-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출하자의 경우 FAX를 활용한 신고 절차 안내

전체 등록 출하자 신고번호 입력(~'21.6월 말)

- 기존 정보 중 출하자 신고번호 없는 출하자에게 출하자 신고 절차 안내 및 유도
- 출하자 신규 입력 시 '출하자 신고번호' 필수 입력
- 현황 관리를 위해 시장도매인별 출하자 명단 공사 제출('20.12월~, 매월 말)

출하자 신고제 산지 홍보

- 출하자 대상 「출하 요령 및 주의사항 안내문」 발송

출하자 신고율 평가지표에 반영 추진

- 2021년 시장도매인 평가 개설자 지표 반영(가안)

사용률	85%이상	70~85%미만	55~70%미만	40~55%미만	40%미만
득점	1.0	0.9	0.7	0.6	0.5

※ 출하자 신고율 산정 = 출하자 신고자 수 ÷ 전체 출하자수(UNIS 등록기준). 끝